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뉴질랜드(New Zealand)
면적	270,534 km ²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2018 기준)
수도	웰링턴(Wellington),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구	4,870,000 명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2018 기준)
민족(인종)	유럽인(74%), 마오리(15%), 아시아인(12%),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1%)
언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교	기독교(약 51%) 및 기타 여러 종교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국가원수	총리: Jacinda Ardern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2-03-26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뉴 FTA	2015-12-20	한-뉴 FTA 정식 발효	
관세상호인정협정	2011-06-01		
영화공동제작협정	2008-09-01		
군수협력협정	2007-11-05		
농림부간협력약정	2007-04-26		
경찰협력약정	2006-06-02		
영화공동제작 약정	2005-11-07		
범죄인인도조약	2001-04-15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	2000-11-20		
형사사법공조협정	2000-03-15		
취업관광사증협정	1999-05-10		
과학기술의정서	1997-09-08		
임업협력협정	1997-04-07		
사증면제협정	1994-08-01		
항공협정	1993-08-16		
이중과세방지협정	1981-11-01		
국제운수소득면세협정	1978-12-01		
어업협정	1978-03-15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	1967-07-10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뉴질랜드 국회, 대한민국 국회>

한국교민 수

30,171 명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인구조사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문재인 대통령, 뉴질랜드 국민 방문

2018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 3일간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국민 방문하여 정상회담,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uckland를 경유하여 12월 3일 동포 간담회, 12월 4일 Jacinda Ardern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수행하였다.

양 정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동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 및 사회보장협정을 연장하여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들에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Jacinda Ardern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지난 1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의를 표하며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뉴질랜드는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경제

- 부산시 오uckland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2017년 4월 3일, 부산시는 오uckland 타운홀에서 현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1996년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부산시는 투자환경과 외국인정구환경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외에도 오uckland가 산업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스마트시티, 해양레저, 영상산업을 타깃으로 한 투자사업들을 중점 발굴 제안했다.

- 부산시-크라이스트처치시와 극지 분야 교류협력 MOU 체결

2017년 6월 4일, 부산 해운대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리안 달지엘(Lianne Dalziel) 크라이스트처치 시장 간의 극지 분야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부산시는 이를 계기로 향후 양 도시 간 극지 관련 우수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기관들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

- Korea Festival in Auckland 개최

주 오uckland 분관은 Korea Festival in Auckland 2018'을 9~11월 간 오uckland 및 인근 지역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의 문화 교류 확대 기회를 가졌다. 현지 학교를 대상으로 한 태권도 워크숍(14학교 28세션), K-Pop 댄스 워크숍(12학교 24세션), Little Cooks 한식조리교실(12학교 36세션), 전통게임체험(10학교 10세션)과 한국 농식품 홍보행사, 한국영화제, 오uckland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가야금 협연,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어 소개 동영상 Simply Korean 및 포스터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지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2.02	3.49	4.22	3.7	2.66
명목GDP (십억\$)	199.81	175.77	185.37	201.39	206
1인당 GDP (PPP, \$)	35,652.64	36,787.97	37,913.76	39,012.07	40,266.45
정부부채 (% of GDP)	34.23	34.3	33.46	31.7	30.36
물가상승률 (%)	1.22	0.31	0.64	1.85	1.4
실업률 (%)	5.35	5.38	5.1	4.7	4.49
수출액 (백만\$)	41,540.77	34,152.31	33,752.91	38,102.3	39,613.08
수입액 (백만\$)	42,522.67	36,618.58	35,934.64	40,127.63	43,875.67
무역수지 (백만\$)	-981.9	-2,466.27	-2,181.73	-2,025.33	-4,262.59
외환 보유고 (백만\$)	15,861.07	14,699.8	17,808.38	20,683.74	17,656.59
이자율 (%)	3.5	2.5	1.75	1.75	1.75
환율 (자국통화)	1.21	1.43	1.44	1.41	1.45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 뉴질랜드의 GDP 실질 성장률은 '16년 4.42%에서 '17년 3.57%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뉴질랜드의 기업투자 회복, 관광업 성장, 국제 유제품 가격 상승,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수요가 플러스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 속에서 플러스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7년 노동당 정부에서 발표한 이민법 강화조치로 인해 내수 소비 위축 및 부동산 가계 대출 증가는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켜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질랜드 상업은행(ANZ)이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는 2018년 9월 117.6 포인트로 여전히 긍정적인 판단이 우세하지만, 2017년 9월(129.9 포인트) 대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플러스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수준의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전망

-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9년 경제 유지될 전망

2019년 GDP 실질 성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민법 강화로 인해 이민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개인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기업투자 회복, 관광업 성장, 국제 유제품 가격 상승,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수요가 플러스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6월 기준 뉴질랜드 누적 방문 관광객 수는 379만 명을 기록, 2017년 4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뉴질랜드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1년 오클랜드에서 개최될 제36회 아메리카스 컵 시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7년부터 10년 기간 동안 전역에 10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Kiwibuild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고 오클랜드 인구 유입 증가로 오클랜드 공항 경전철 건설, 도심 경전철 및 고속도로 확충 프로젝트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이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어 건설 경기 활성화는 2018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304,511,262
2	오스트레일리아	7,290,951,621
3	미국	3,912,877,260
4	일본	2,441,925,942
5	대한민국	1,462,390,307
6	영국	1,287,076,646
7	싱가포르	838,130,096
8	말레이시아	820,144,258
9	인도네시아	774,095,119
10	아랍에미리트	761,879,73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041,155,714
2	오스트레일리아	5,850,800,283
3	미국	4,040,218,991
4	일본	2,071,442,627
5	영국	1,170,930,738
6	대한민국	1,097,974,559
7	Other Asia, nes	781,388,563
8	싱가포르	757,786,724
9	말레이시아	661,510,283

10	아랍에미리트	584,420,266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590,369,735
2	오스트레일리아	5,781,299,652
3	미국	3,700,824,940
4	일본	2,078,658,253
5	대한민국	1,043,486,039
6	영국	1,022,078,888
7	싱가포르	786,376,667
8	Other Asia, nes	759,937,777
9	인도네시아	606,728,617
10	타이	576,668,76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482,093,069
2	오스트레일리아	6,252,047,932
3	미국	3,781,111,955
4	일본	2,275,543,956
5	대한민국	1,059,761,886
6	영국	1,028,107,926
7	홍콩	875,991,226
8	싱가포르	810,018,118
9	Other Asia, nes	800,959,397
10	말레이시아	721,972,546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199,913,237
2	오스트레일리아	5,175,941,823
3	미국	4,932,306,174
4	일본	2,833,474,274
5	독일	2,044,022,505
6	말레이시아	1,934,638,005
7	대한민국	1,904,063,775
8	싱가포르	1,709,193,638
9	타이	1,461,366,708
10	영국	1,103,983,936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146,233,098
2	오스트레일리아	4,330,137,770
3	미국	4,309,472,771
4	일본	2,389,219,295
5	독일	1,710,855,836
6	타이	1,513,167,302
7	대한민국	1,345,963,694
8	싱가포르	1,262,352,820
9	말레이시아	1,217,328,850
10	프랑스	963,430,537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237,133,528
2	오스트레일리아	4,555,506,898
3	미국	4,100,220,036
4	일본	2,568,761,820

5	독일	1,755,565,126
6	타이	1,630,756,596
7	대한민국	1,539,805,665
8	영국	1,022,349,790
9	싱가포르	1,003,487,286
10	말레이시아	941,148,69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748,410,971
2	오스트레일리아	4,910,884,426
3	미국	4,286,936,568
4	일본	2,960,723,532
5	독일	2,142,503,148
6	타이	1,889,662,228
7	아랍에미리트	1,422,244,784
8	대한민국	1,421,114,761
9	싱가포르	1,371,514,051
10	말레이시아	1,255,400,535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6,027,792,415
2	440320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1,883,949,638
3	020230	뼈 없는 것	1,679,789,059
4	040210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1,580,904,569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482,077,225

6	020442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1,343,771,814
7	040510	버터	1,180,972,491
8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1,128,572,309
9	040590	기타	960,824,708
10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23,747,863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3,467,079,688
2	020230	뼈 없는 것	1,922,006,700
3	44032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1,335,833,719
4	020442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1,165,837,164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95,873,964
6	081050	키위프루트	1,007,742,041
7	0402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955,770,061
8	040510	버터	886,072,443
9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864,455,343
10	040590	기타	744,790,323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3,171,250,047
2	44032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1,632,198,732
3	020230	뼈 없는 것	1,579,500,192
4	081050	키위프루트	1,190,835,602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35,704,163
6	020442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932,626,663
7	040510	버터	925,648,940
8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886,155,635

9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878,758,859
10	040590	기타	787,542,771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206,413,952
2	440321	-	1,885,105,945
3	020230	뼈 없는 것	1,637,285,429
4	040510	버터	1,346,755,033
5	020442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1,290,140,585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69,075,331
7	081050	키위프루트	1,174,360,266
8	040590	기타	1,012,961,334
9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23,174,854
10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897,056,058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3,966,802,646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653,794,807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215,009,384
4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1,121,779,536
5	271019	기타	1,088,131,689
6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38,415,976
7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69,772,228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11,444,653

9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07,994,878
10	300490	기타	506,728,153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232,563,468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365,466,053
3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80,047,063
4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783,182,293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81,583,838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51,954,417
7	271019	기타	539,594,552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492,340,327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470,297,525
10	300490	기타	450,792,189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779,676,676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522,257,194
3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786,550,501
4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73,087,990
5	271019	기타	637,780,158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69,699,929
7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560,341,170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21,743,735
9	300490	기타	498,102,644

10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55,298,792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211,318,463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1,755,980,732
3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62,071,661
4	271019	기타	797,747,292
5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671,810,293
6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645,356,428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30,426,870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565,112,891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515,113,753
10	300490	기타	494,121,867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1,730	1,526	204
2015	1,263	1,225	38
2016	1,305	1,098	207
2017	1,306	1,214	92
2018	1,468	1,151	31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1	휘발유	206	0	206
2	1332	경유	218	0	218
3	7411	승용차	266	0	265
4	7251	건설중장비	66	0	65
5	1333	제트유및등유	40	0	40
6	2140	합성수지	49	0	48
7	8352	축전지	21	0	20
8	6134	아연도강판	14	0	13
9	6136	석도강판	24	0	23
10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19	0	1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1331	휘발유	332	0	332
2	1332	경유	305	0	305
3	7411	승용차	221	0	221
4	7251	건설중장비	73	0	73
5	1333	제트유및등유	64	0	64
6	2140	합성수지	46	0	46
7	8352	축전지	21	0	21
8	6134	아연도강판	17	0	17
9	6136	석도강판	17	0	17
10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16	0	1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311	원목	0	329	-330
2	0243	낙농품	0	192	-192
3	0221	가축육류	0	113	-114
4	0116	과실류	1	64	-64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93	-94
6	2511	펄프	0	44	-44
7	1322	유연탄	0	8	-9
8	0233	동물성한약제	0	24	-25
9	8423	전원장치	0	23	-24
10	0312	제재목	0	29	-3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311	원목	0	253	-253
2	0243	낙농품	0	207	-207
3	0221	가축육류	0	104	-104
4	0116	과실류	0	90	-90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86	-86
6	2511	펄프	0	48	-48
7	1322	유연탄	0	41	-41
8	0233	동물성한약재	0	31	-31
9	8423	전원장치	0	25	-25
10	0312	제재목	0	24	-2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뉴질랜드-호주 Closer Economic Relations(CER)	호주	1982-12-01	1983-01-01	기존 뉴질랜드-호주 FTA 대체
ASEAN Australia New Zealand FTA (AANZFTA)	아세안 국가, 호주, 뉴질랜드	2009-02-27	2012-01-01	
뉴질랜드, 홍콩, 중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홍콩, 중국	2010-03-29	2011-01-01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2009-10-26	2010-08-01	
뉴질랜드, 태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태국	2005-04-20	2005-07-0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P4)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2005-06-03	2006-05-28	
뉴질랜드-한국 FTA	한국	2015-03-23	2015-12-20	
뉴질랜드-중국 FTA	중국	2008-04-07	2008-10-01	
뉴질랜드, 싱가포르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싱가폴	2000-11-14	2001-01-01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2018년 10월 비준 되었으며 현재 최종 의회 승인 대기 상태로 협상 진행 중	
뉴질랜드-EU FTA	EU 소속 28개 국가	2009년 뉴질랜드 제안에 따라 2015년 초기협상을 진행함. 2017, 2018년에 후속 협상이 지속됨.	
뉴질랜드-인도 FTA	인도	2010년 초기협상이 열렸으며 2015년, 2016년 후속 협상이 지속됨.	
뉴질랜드-RBK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2010년 초기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우크라이나와 크라메니아 사태로 현재 협의 중단 상태임.	

뉴질랜드-중국 FTA Upgrade	중국	2008년 FTA 협정 이후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3배 이상 증대됨에 따라 기술, 환경, 서비스 분야 등 협정 영역 확대 예정	
뉴질랜드-태평양 동맹 FTA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2011년 부터 추진되어 현재 협상 진행 중임.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2012년 아세안 협정에서 발제되어 현재 협상 진행 중임.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의거해,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 관련기관 : 1차 산업부

-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1차 산업부

- Anthrax prevention -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
 - 관련기관 : 1차 산업부

-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외교통상부

- Chewing tobacco
 -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보건부

-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 관련기관 : 보건부

-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 관련기관 : 보건부

- Dog tracking devices
 - 주파수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 관련기관 : 기업혁신고용부

- Dogs
 -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 품종의 개 반입제한
 - 관련기관 : 내무부
- Endangered Species
 -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 관련기관 : 보존부
-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환경보호청
- False or misleading goods
 -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소비자보호부
- Hazardous substance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환경보호청
- Hazardous wastes
 - 수출입(제한) 금지명령에 의해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 관련기관 : 환경보호청
- Laser Pointer(High Power)
 -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 관련기관 : 보건부
- Marine mammals such as seals, whales, dolphins, porpoises
 -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보존부
- Money
 -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현금 반입 제한
 - 관련기관 : 경찰청
-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 관련기관 : 소비자보호부
- Objectionable material
 -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 관련기관 : 관세청
-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환경보호청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환경보호청

-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환경보호청

- Prescription medicines
 -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 관련기관 : 보건부

- Radio jamming equipment
 - 미허가 주파수방해장치 반입금지
 - 관련기관 : 경제개발부

- Radioactive materials
 -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방사선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 Southern bluefin tuna
 -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 관련기관 : 1차 산업부

- Trout and trout products
 -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 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보존부

- Tyres
 -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경제개발부

- UN sanctions
 -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 관련기관 : 외교통상부

- Unsafe goods
 -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소비자보호부

- Weaponry
 -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 관련기관 : 경찰청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 2019년 2월 확인 가능 최신 자료)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 인증마크 및 인증대상품목
 -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 제조 또는 식품 내수유통, 식품 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 여부는 1차산업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RMP와 FSP는 각각 2000년, 1996년에 도입됐으며 1차산업부에서 인증을 담당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HACCP 기반의 RMP, FSP 시스템 구비 → 1차산업부에 신청 → 1차산업부 감사 → 1차산업부 승인 및 인증 →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
 - 소요기간: 6개월 이내
 - 비용: 시스템 구비에 5,000~10,000뉴질랜드달러 소요, 그 외에 주기적인 MPI 감사에 따른 비용이 청구됨.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해당 인증 없이는 식품 제조가 불가능하다. 해당 인증은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 되며, 문제 발생 시 사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식품 수입 및 유통에 관한 FSP의 경우, 임의 규정이라는 하나 현지 주요 대형마트 납품 시 해당 인증을 필수로 요구한다.

2) Medsafe(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인증마크 및 인증 대상품목
 -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 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 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한다.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 여부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Medsafe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Medsafe가 담당한다. 안전 표준을 인증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해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채택한다. 즉,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 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Medsafe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12~24개월 정도 소요
 - 비용: 품목에 따라 30,000~80,000뉴질랜드달러 소요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강제인증으로 미인증 시 제조, 수입, 유통이 불가능하다. 미백 치약, 주름개선 화장품 등과 같은 기능성 제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취급돼 Medsafe 인증이 필수이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3)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 인증마크 및 인증대상품목

- 상수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 수도꼭지 제품은 호주의 Watermark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상수 시설 제품의 인증 집행과 관련해 뉴질랜드는 호주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테스트와 인증 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Sai Global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약 12~24개월 정도 소요

- 비용: 품목에 따라 3,000~10,000뉴질랜드달러 소요되며 인증 발급 후 연간 갱신비용이 추가로 발생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상수도와 관련된 제품은 강제인증으로 미인증 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TBT

뉴질랜드의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뉴질랜드 정부 및 관련 산업 협회는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바이어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1) 건축자재 인증제도 BRANZ

BRANZ는 목재 소재가 대부분인 뉴질랜드 주택과 건물의 안전 규제를 위한 민간 인증이며 인증 취득에 높은 비용과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정부 규제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건설업계에서 BRANZ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인증 없이는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민간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설계업체가 정부에 건축 승인을 신청할 시에도 대부분 BRANZ 여부로 사용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기 제품 인증 제도 RCM

2013년 3월 1일자로 기존 전자제품 C-Tick 인증을 대체하였으며 호주, 뉴질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RCM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요구하는 필수인증이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나, 제품하자로 문제가 생길 시 수입업자의 면책용으로 사용되며, 인증 미취득 시 현지 제품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 중요한 인증으로 볼 수 있다. 인증 절차는 호주 정부의 인증기관 (Standards Australia)에서 전자제품 규정 준수 인증 AS 4417을 획득한 후 호주 전기규제 허가청(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등록을 마치면 RCM 마크 획득 가능하며 품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취득 기간은 약 3~6개월, 평균 취득 소요 비용은 NZ 1.2만 달러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금지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방법은 '웹 초기 화면> Library> The Working Tariff Document' 순으로 접근하고, 해당 품목군 섹션을 찾은 후 HS Code를 검색하면 pdf 파일로 검색이 가능하다.

pdf 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CA, CN, TH, TPA 등의 기호가 나오는데,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USD 3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류, 식품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2)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 1,000 뉴질랜드 달러 미만인면서 관세와 GST를 포함하여 60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품목에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 1,00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2018년 7월 기준 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 뉴질랜드에 들어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 허가통관(Permit Entry)
 -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때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 가수입계(Sight Entry)
 -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ECI, Electronic Cargo Information)
 - 뉴질랜드에서는 1,000뉴질랜드달러 이하인면서 관세 및 GST 합계가 60뉴질랜드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해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운송 수단에 따른 부과 요금이 적용되며 항공의 경우 11.51뉴질랜드달러, 선편의 경우 28.83뉴질랜드달러가 부과된다.

3)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페이지(www.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해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 상업송장

-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수입 통관서류 작성 시 기입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수단, 상업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수입일자(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운송비용, 보험료, 포장비용 등) 등이다.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각 포장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 세관의 조사항목

-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통관 경비

-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 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GST는 통관일 기준 관세청 고시 환율을 적용해 총금액의 15%로 계산된다.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29.26뉴질랜드달러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며, 여기에 농축수산물품의 경우 1차산업부 검역 통관비(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Biosecurity System Entry Levy) 19.98뉴질랜드달러가 추가된다.

-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 절차상의 제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 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해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2)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동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

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성상표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ION Cargo Solution

주소	PO box 201205, Auckland Airport 2150
전화번호	+64-9)254-4900
이메일	cargo@aioncargo.com
홈페이지	http://www.aioncargo.co.nz/
비고	교민업체

○ GS Express

주소	10/61 View Road, Wairau Valley, Auckland 0627
전화번호	+64-9)444-7897
이메일	info.gsexpress@gmail.com
홈페이지	https://www.gsexpress.co.nz/
비고	교민업체

○ EIF

주소	PO Box 97727, Manukau City, Manukau 2241
전화번호	+64-9)263-0222
이메일	lundj@eif.co.nz
홈페이지	http://www.eif.co.nz/

○ Mainfreight

주소	2 Railway Lane, Otahuhu, Auckland
전화번호	+64-9)275-8136
이메일	auckland.enquiries@mainfreight.co.nz
홈페이지	https://www.mainfreight.com/nz/

○ Tapper Transport

주소	373A Neilson Street, Onehunga, Auckland
전화번호	+64-9)634-4780
이메일	enquiries@tapper.co.nz
홈페이지	http://www.tapper.co.nz/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차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는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해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Vce, OIO)이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www.linz.govt.nz) 내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 토지 관련 투자 시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소유가 25% 미만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토지를 구매 시 OIO의 승인이 필요하다.

- 토지 총면적 5ha 초과 시
- 토지 총면적 4,000㎡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면적이 4,000㎡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 주거용 주택인 경우(신규 주택 제외)

○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 주식 매입 금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회사 발행 주식 감평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투자 대상 회사 주식 발행인의 자산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외 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토지 투자 승인 절차(승인 필요 시)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 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OIO 주소: Overseas Investment OV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Fax: + 64 4 460 0111, Email: oio@linz.govt.nz)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개요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쟁 관련 법규를 개혁해왔다. 그 결과로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주는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2018년 기준). 일부 민감한 부문(일부 토지 및 환경 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다방면에 걸쳐 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영화 제작산업에 한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투자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 조세감면 /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 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보조금제도인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NZSPG)'가 도입됐다. 기존의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LBSPG)'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SPIF)'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이면 기존의 인센티브금액(LBSPG-15%, SPIF-최대 40%)이 외국영화 제작의 경우 20%(별도 기준 충족 시 5% 추가), 국내영화 및 방송 제작의 경우 40%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특수효과 및 후반 작업 시 제공되던 보조금 제도인 'Post, Digital and Visual Epects Grant(PDV Grant)' 역시 변경됐으며, 1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제작비용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금액은 기존 15%에서 20%(별도 기준 충족 시 5% 추가)로 인상됐다.

3) 법령 개정

2010년 10월 '반지의 제왕' 후속작인 '호빗'이 영화 연기자들의 파업으로 뉴질랜드에서 촬영되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호빗 법(Hobbit Law)'이다. 호빗 법은 영화 산업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화산업 종사자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국적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노조 파업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국을 최적의 영화 촬영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제한 및 금지(업종)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반입되는 동식물(치어, 묘목, 발아 가능 종자,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하고 있으며,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V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1억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해외 거주자 및 기업, 기관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의 납세번호(IRD Number)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2018년 10월부터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구매 시 OIO의 허가를 득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납세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며, 해당 계좌는 뉴질랜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계좌 소유자의 신원 확인이 돼야 한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인 농축산 산업이 국가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경제구역이 없다.

산업단지

없음.

주요 지역별 여건

○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 상업도시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80만의 인구 중 150만 명이 거주하며, 도매 판매업의 48%, 교통·통신사업의 46%, 금융·보험·비즈니스 산업의 44%가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장소인 오클랜드는 아시아인의 비중이 21.6%로 나머지 지역의 5.5%에 비해 16.1%나 높다. 세계 10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산업 역시 크게 발달했다.

또한, 저금리와 인구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주택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2018년 오클랜드 공항 철도 및 트램 건설 등 굵직한 건설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어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산업이 발달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2011년 2월 지진이 발생했던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2014년에 시작된 400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지진재건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인구와 자금의 급격한 유입이 되었으며 현재 지진 재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862.46	2,436.8	-244.64	2,910.79	3,572.0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529.76	471.06	-57.73	62.22	581.83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19	7	79,025	23	66,737
2015	20	0	9,256	21	8,994
2016	18	6	8,843	22	8,101
2017	3	2	275	6	772
2018	10	7	7,767	12	7,33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4	0	525	4	525
광업	1	1	62,641	6	55,453
제조업	1	0	4,976	1	4,976
도매 및 소매업	5	0	4,655	5	4,632
운수 및 창고업	1	0	50	1	50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64	1	165
금융 및 보험업	1	0	5,000	0	0
부동산업	2	2	810	2	8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100	1	2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	42	1	42
교육 서비스업	1	1	62	1	6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4	0	704	3	365
광업	0	0	0	3	69
도매 및 소매업	16	0	8,552	15	8,56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2	2,288	7	1,625
제조업	1	0	3,276	1	3,276
도매 및 소매업	8	1	2,567	8	2,494
운수 및 창고업	2	0	170	2	170
숙박 및 음식점업	1	1	364	2	358
정보통신업	1	1	145	1	145
부동산업	1	1	33	1	33
N/A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4	4	501
제조업	1	1	21	1	21
도매 및 소매업	1	1	250	1	2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1,730	2	1,735
건설업	1	1	671	2	350
도매 및 소매업	3	2	4,756	3	4,759
정보통신업	1	1	277	1	270
금융 및 보험업	1	1	0	1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7	1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326	2	21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o Korean Air Regional Office, Auckland

진출년도	199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주)대한항공

o Ottogi New Zealand Ltd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축육, 가공식품
모기업명	(주)오뚜기

o San Won Ltd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수산물 저장
모기업명	(주)동원수산

○ Kookmin Bank Auckland Branch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금융 전반
모기업명	국민은행

○ Hansol New Zealand Ltd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원목
모기업명	(주)한솔홈데코

○ Jaico Ltd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지사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수산업
모기업명	(주)주암산업

○ Kia Motors New Zealand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td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 Electronics New Zealand Branch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Hyundai Motor Company Pacific HQS Ltd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Hyundai Rotem Company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도차량
모기업명	현대로템

○ SCFNZ Ltd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원목

모기업명

선창산업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뉴질랜드의 회사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외국 기업으로 정의된 회사는 재무보고법(Financial Reporting Act 2013, 이하 FRA 2013)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간신고서(Annual Return)를 등록한 첫 해를 제외하고, 결산일로부터 5개월 20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Annual Return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지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서류 송달 주소, 주식자본금 요약, 이사들의 인적 사항,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최종 연차 총회일

외국 기업은 FRA 2013에 따라 연간신고서 외에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돼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돼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그러나, 2015년 2월에 개정된 FRA 20에 의해 자산 2천만 뉴질랜드달러, 연 매출 1천만 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외국 기업은 재무 보고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됐다.

지사

지사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장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사의 영문 재무제표(한국 재무제표일 경우 공증 번역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간신고서와 연차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은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 수집이나 연락 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해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설립되는 Company 형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imited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회사명
- 주식(1주 이상)
- 1인 이상의 주주
-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인 Partnership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한책임, 무한책임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Sole-Trader로 뉴질랜드 IRD에 등록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 번호(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o KPMG 회계법인

전화번호	64-9)367 5800
주소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140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nz/en/home.html
이메일	lisakim@kpmg.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 담당자 근무 중
비고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o Deloitte 회계법인

전화번호	64-9)303 0700
주소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nz/en.html
이메일	brelee@deloitte.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 담당자 근무 중

○ Kenton Chambers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58-1900
주소	Level 8, 300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www.kentonlaw.co.nz/
이메일	ken@kentonlaw.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대표변호사 근무 중
비고	한국계 법무법인으로 해외투자, 노무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오용근

○ Chapman Tripp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57-9000
주소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홈페이지	http://www.chapmantripp.com/
이메일	info@chapmantrip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67-8000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www.russellmcveagh.com/
이메일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 Bell Gully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916-8800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홈페이지	https://www.bellgully.com/
이메일	info@bellgull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뉴질랜드 내의 투자법인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20여 일의 사업철회 고지 및 검토 기간이 걸리지만, 해외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철회 고지에서 신청서 작성까지만 최소한 3달이 넘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에 부채가 있거나, 법인 철회 신청 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철수를 하고자 할 때는 수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회사를 청산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해외 투자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청산, 혹은 철수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주간신문 New Zealand Gazette나 주요 지역신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 광고를 해서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회사를 철수함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광고가 나간 석 달 후 뉴질랜드 경제 혁신 고용부가 지정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뉴질랜드 법인 등기부에서 회사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업혁신고용부 산하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서 회사 기록이 삭제되면서 철수 절차가 끝나며, 회사를 철수기로 한 날짜 이전에 반드시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3)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Companies Act 1993의 321절의 여섯 항목이 법인 철수와 연관된다. 이 법령에서는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창립자 혹은 투자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49뉴질랜드 달러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737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3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1
-------------------------	-------	-------------------------	-------	-------------------	----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피고용인은 누구나 서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계약은 개별계약이거나 단체계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형태를 취한다. 고용 계약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이 각자 서명한 후, 서명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

한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나 4,000뉴질랜드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으며, 고용관계법을 어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 1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법인에 대해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1B조)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overtime)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 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 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시간 외 수당 근무 거부를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고용주의 호출 시에만 근무하는 노동계약으로 최소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zero-hour contracts'가 금지됨에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근무 시작시간, 종료시간, 주당 근무 가능 시간 등의 내용이 일부 혹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을 상호 합의했어도 고용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주는 타당한 이유나 정확한 보상 없이 피고용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간 외 수당은 시간 외 근무 처음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시간 외 수당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간 외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시간 외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재(mediation) 서비스(전화 0800-209-020)를 이용할 수 있다.

휴가

뉴질랜드 휴가법(Holidays Act)은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50조)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평일(월-금)인데 그 날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 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 하루 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1년에 4주이다. 유급 육아휴직은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18주까지 보장된다. 뉴질랜드 유급 육아휴직제도는 고용주가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주당 최대 516.85뉴질랜드달러까지 보조를 받는 방식이다.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고 연차사용 후 남은 기간만큼 국세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mbie.govt.nz)

근무 6개월 후부터 피고용인은 5일간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그 후부터는 매 12개월에 5일씩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는 피고용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피고용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에 대해서 해당 일급 또는 평균일급을 지불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 등 질병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해고

Equal Pay Act 1972는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 임금 차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을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해고 조건은 고용 계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3번 이상 경고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해야 하며, 대개 4주 전에 해고 사실을 피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90일 수습 기간(90-day trial) 제도에 따라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만약 수습 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퇴직을 할 시에는 따로 명시된 퇴직급여는 없으나, 일하면서 누적된 휴가비(Holiday pay)를 퇴직 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1년에 4주의 휴가를 쓰는 것에 비례해서 책정된다.

노사협의회

기업혁신고용부는 'Employment Relation Act 2000'에 의거 고용관계를 법령화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이 만료됐을 때, 그리고 양측이 최소 4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한 후에만 합법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고용주는 협약 만료 40일 전부터 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뉴질랜드는 무상 공공의료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

뉴질랜드는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 실업 수당(Job Seeker Support)은 자녀, 결혼 여부에 따라 주당 최대 635뉴질랜드 달러가 지원된다.

산재보험

뉴질랜드는 별도의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험공사(ACC)를 통해 재활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치료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급여 손실분의 80%까지 보전해준다.

국민연금

뉴질랜드에서 일정 거주 기간을 만족하면 Superannuation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지급되는 연금액은 주당 최대 463.04뉴질랜드 달러이다. 연금액은 65세부터 지급되며 결혼 여부, 세금 코드 등에 따라 일부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Kiwi Saver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의 3~8%를 적립하여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이다. 개인 적립금과 함께 정부 지원금, 고용주 지원금이 적립금으로 투입되어 운용되며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투자상품 제시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2011년 4월에 28%로 하향 조정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급여와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에는 별개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개별 소득자에게 가족 소득 단위로 제공된다. 가족 세액 공제 기준은 만 13세 이하 자녀 1인 연 74,000뉴질랜드 달러, 자녀 2인 연 90,500뉴질랜드 달러, 자녀 3인 연 105,500뉴질랜드 달러, 자녀 4명 이상 연 120,500뉴질랜드 달러이다.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해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200뉴질랜드 달러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1만 5,000뉴질랜드 달러를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2010년 10월부터 연 소득 1만 4,000뉴질랜드 달러까지 10.5%, 4만 8,000뉴질랜드 달러까지 17.5%, 7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30%,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3%를 부과하는 누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가가치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소비활동에는 부가가치세(GST)라고 불리는 간접세가 포함된다. 2018년 기준 세율은 15%이고 구매 종류 및 가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그들이 지불한 GST를 회계 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

자동차 연료(휘발유, 디젤 등), 담배, 주류의 경우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GST)에 특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담배의 경우 2025년 금연국가를 목표로 매해 인상하고 있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1985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후 외환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변동환율 제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해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외환 규제

뉴질랜드는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으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ML, FATCA 등이 적용되고 있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018년 기준 4만 118달러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연 소득 1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15세 이상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38.2%는 연 소득 2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로 소득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정 당 수입을 보전해주는 각종 사회 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저소득층에 속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소비 성향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018년 기준 4만 118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나, 최고 33%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고 현지 공산품 물가가 높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한다.

중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해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속도의 향상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쇼루밍과 같이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하는 새로운 소비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IT, 자동차,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 LCD TV,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 및 소비재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일부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음식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화장품 등 소비재 제품도 뉴질랜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기존 거래선을 바꿈으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 거래선과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거래선을 바꾸게 되더라도 뉴질랜드나 호주에서의 평판을 먼저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한국 업체들은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이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한편, 잘 다듬어진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과 회사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바이어들은 회사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화된 영문 홈페이지 구축은 뉴질랜드 진출을 위해 필수이다.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해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사항은 회신기한을 준수해 답하고,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해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주 1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조사 시 소매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제품의 소매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2) 대금 결제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서구사회와 비슷하며, 대금 결제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L/C보다는 T/T를 선호한다. T/T 결제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는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Kotra Online Payment System, kops.buykorea.org)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3) 거래 시 유의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증하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수준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단위의 Family Business로 운영된다. 직원별 담당 업무가 정해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 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기업 문화

뉴질랜드 바이어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해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 기간이나 휴일을 방해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사기업은 성탄절과 신경연휴를 전후로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휴업을 한다. 따라서 12월과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기간에는 출장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지 방문대상 업체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다.

럭비가 유명하기 때문에 럭비를 주제로 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며, 럭비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의 접대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해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다. 따라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뇌물을 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러운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게 좋다.

보통 선물을 해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선물하고 싶을 경우에는 친숙해진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국 전통문양의 책갈피, 한복 입은 인형, 태극부채와 같이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 혹은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4) 약속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돼 있으며,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주로 오후 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 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사람은 뉴질랜드식 영어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메카 인더스트리

제조 산업이 취약한 뉴질랜드에서 자국산 변압기로 시장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ETEL사는 대부분의 변압기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한국 또한 주요 공급처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던 품목들이 하나둘씩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이나 인도산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던 변압기 주요 부품인 냉각탱크에 심각한 불량 발생해 생산계획에 큰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은 2015년 3월, 한-뉴 FTA 관련 설문조사 당시 접촉한 ETEL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했으며, 새로운 공급처를 물색 중이던 동사 구매담당자에게 해당 부품 공급이 가능한 한국기업의 추천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오클랜드 무역관은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 중인 메카인더스트리사를 소개하고 업체 정보를 전달했다.

메카인더스트리사는 용접기 캐리어, 고가 수직사다리 등을 제조하는 씯메탈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호주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작지만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변압기 냉각 탱크 샘플 제작을 의뢰받을 수 있었고, 6월에 5종의 샘플이 ETEL사에 전달됐다. ETEL사는 중국에서 문 제된 탱크 표면의 아연도금 품질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메카인더스트리사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됐다.

다만, 도면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전달 오류가 있어 1차 샘플이 합격을 받지 못해 2차 샘플을 다시 제작해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메카인더 스트리사는 오류 재발생 방지를 위해 8월, 해당사 대표 및 실무진이 직접 뉴질랜드를 방문해 오클랜드 무역관의 지원 하에 ETEL사와 세부 적인 기술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2월에 2차 샘플 5종의 제작을 완료했으나 품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단가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기존 견적보다 약 20% 높은 재견적을 제시했다. 최종 계약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무역관은 포기하지 않고 ETEL사에 높은 품질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ETEL사는 당초보다 상승된 견적에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결국 20% 인상된 재견적 수용의사를 무역 관을 통해 메카인더스트리사에 전달하고 곧바로 1차 시험주문량을 발주했다.

시험주문량이 성공적으로 납품이 되면서 신뢰도가 제고됐고, ETEL 사에서 취급하는 다른 제품에 대한 오더가 이루어지는 등 탄탄한 비즈 니스 파트너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일 때마다 양쪽을 설득해가며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무역관의 도전 과 완벽한 품질을 추구한 한국기업의 노력, 그리고 이들을 신뢰하고 인정해준 현지 바이어 간의 절묘한 하모니가 이뤄낸 결과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저가 공세를 뚫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이 답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2) 경천 식품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은 2015년 한-뉴 FTA 타결에 맞춰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 김제품 수요가 높음을 확인했다. 이에 수출경험이 없으나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경천식품을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대상으로 선정해 현지 바이어 들에게 소개했다.

2015년 7월, 한국산 조미 김 수입을 희망하던 Ottogi NZ사는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으로 통해 경천식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 에 바이코리아에 지시 인콰이어리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KOTRA 대전충청지원단과의 협업과 경천식품의 빠른 협 조로 바이어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인 결제조건에서 양측이 견해차가 너무 커서 1차 협상이 중단됐다 .

수출경험이 없던 경천식품은 기존 국내 거래 관행대로 선결제를 요구했지만, 바이어는 운송과정에서의 변질 여부를 우려해 컨테이너 하역 후 30일 이내 결제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무역관과 대전충청지원단은 경천식품과 Ottogi NZ를 설득해 컨테이너 도착 후 즉시 결제 조건이라는 절충안으로 합의하게 돼 2015년 11월, 4,729달러 상당의 시범 주문을 완료했다.

이미 다양한 브랜드의 한국 조미김 제품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천식품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높은 품질로 1차 선적량 이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Ottogi NZ은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진행했다. 특히 5월부터는 거래량을 기존 20ft FCL에서 40ft FCL로 늘리기까지 했다.

2016년 6월 29일에는 Ottogi NZ이 뉴질랜드 최대 식료품 유통체인 Foodstuffs 바이어와 함께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에 참가해 경 천식품 조미 김의 현지 유통망 입점을 논의했다. 그리고 2016년 9월, Foodstuffs 산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New World 매장에 경천식 품의 시골김 제품이 들어가게 됐다.

이 성공사례는 비록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이라 할지라도 좋은 가격과 우수한 품질, 그리고 바이어에 대한 빠르고 성의 있는 대응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부 내수기업들의 경우, 현지 바이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가격 책정 및 최소주문량을 고집하며 거래가 불발되는 예가 많았다. 멀리 내다보는 전략으로 바이어에게 한 번쯤 양보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의 변신이 어렵지만은 않다.

3) 오투기

(주)오투기는 청정 지역과 축산업으로 이름난 뉴질랜드의 장점을 활용,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식품 원자재를 가공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460만 달러로 1995년에 회사를 설립했고,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 거리인 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 1997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투자 초기에는 자원동의(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냄새,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투자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해 쇠고기 및 사골 등 액기스 제품을 가공, 농축시켜 한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양질의 식품 원자재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노사 분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 투자 목적인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지 교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제품의 수입, 판매업무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소스류 생산라인을 신규로 가동시키고 있으며, 2016년에는 600만 달러 규모의 냉동창고를 건설해 냉동 물류사업에 새롭게 진출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비자협정을 맺어 3개월 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시 체류목적, 기간, 체류지 주소 등이 기입된 입국카드를 작성하며 입국 심사관에 따라 귀국 항공편 또는 소지금액이나 신용카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을 접촉, 비자 발급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며, 이미 동일한 비자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ray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경미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50개비(2갑),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관세청(www.customs.govt.nz)이나 1차산업부 산하 동식물 검역기관(www.biosecurity.govt.nz)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64-4) 473-9073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z-ko/

○ 주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전화번호	64-9)379-0818
주소	Level 12, Tower 1, 250 Queen Street, Auckland 101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전화번호	64-9)303-2625
주소	Level 7, 63 Albert St, Auckland
홈페이지	http://www.nzkoreanedu.com/

○ 오클랜드 한인회

전화번호	64-9)443-7000
주소	5 Argus Pl, Hillcrest, Auckland
홈페이지	https://nz.korean.net/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전화번호	64-4)915-4400
주소	P.O. Box 3705, Wellington,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s://www.employment.govt.nz/

비고	기업 운영, 고용, 기술 혁신 담당
----	---------------------

○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전화번호	64-4)890-1500
주소	12-22 Hawkestone Street, Thorndon, Wellington
홈페이지	https://www.ird.govt.nz/

○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전화번호	64-4)931-4600
주소	Statistics House, The Boulevard, Harbour Quays, Wellington
홈페이지	https://www.stats.govt.nz/

○ 정부정보서비스(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주소	Level 3, Corner Aitken & Molesworth Street, Wellington
홈페이지	http://www.data.govt.nz/

○ 한국 뉴질랜드 경제인 협의회(Korea New Zealand Business Council)

전화번호	64-4)475-8955
주소	PO Box 28041, Wellington
홈페이지	http://knzbc.nz/

○ 뉴질랜드 헤럴드(The New Zealand Herald)

전화번호	64-9)373-6400
주소	46 Albert St, Auckland Central,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nzherald.co.nz/

○ 텔레비전 뉴질랜드(TVNZ)

전화번호	64-9)916-7000
주소	100 Victoria St West, Auckland Central,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tvnz.co.nz/

○ 뉴질랜드 미디어웍스 (MediaWorks NZ)

전화번호	64-9)928-9000
주소	3 Flower St, Eden Terrace,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mediaworks.co.nz/

○ 라디오 뉴질랜드(Radio New Zealand)

전화번호	64-4)474-1999
주소	155 The Terrace, Wellington Central, Wellington
홈페이지	https://www.radionz.co.nz/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49 NZ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7.4
2	식품	비빔밥	1인분	1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1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7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7
8	의료	항생제	12정	13.4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3.7
10	교통	오클랜드 기차요금	기본요금	3.7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8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0.1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5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14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0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25.6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최저가)	360ml	1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11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9127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75

<자료원 : RBNZ, 뉴질랜드 교육부, MBIE, Countdown, BP, Auckland Transport 외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뉴질랜드 통화는 뉴질랜드달러(NZ \$)로서 1뉴질랜드달러는 100센트이고, 주화는 10, 20, 50센트와 1, 2달러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달러가 있다. 뉴질랜드 지폐는 플라스틱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환전방법

환전은 평일 영업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20뉴질랜드달러 정도 이상만 되면 대부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에서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나(크게는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100달러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이용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돼 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 시 일부 호텔 또는 상점에서 1%~2% 수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행자 수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나. 교통

교통상황

뉴질랜드의 대중교통으로는 버스와 철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넓은 나라에 비해 인구가 적어, 비용 문제로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은 미미한 편이다.

버스

뉴질랜드에서 버스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익스프레스 버스, 환승 제도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적용되어 있다. 밤 10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버스 운행이 크게 변경되므로 사전에 버스 시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클랜드 지역 대중교통 정보는 Auckland Transport(<https://at.govt.nz/bus-train-ferry/>)에서 확인 가능하다.

택시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2018년 12월 기준 기본요금 3.00뉴질랜드달러 + km당 2.50뉴질랜드달러 정도이며 택시 회사 및 차량 별로 요금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되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주 통신사로 스파크(Spark, 구 Telecom), 보다폰(Vodafone), 투디그리(2degree)가 있는데, 회사별로 약정이나 계약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금제는 크게 선불제와 월 지불제로 나뉘고 상세조건은 각 통신사 영업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별정 통신 업체인 Skinny(Spark망 사용), Warehouse Mobile(2degree망 사용) 등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에 진출했다.

인터넷(와이파이)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돼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 버전도 공급)가 많아 이용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하다(1시간 1~2뉴질랜드달러). 다만, 전반적으로 인터넷 속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느린 편이다. 또한, 공중전화 부스 주변으로 무료 와이파이(시간 및 용량 제한)를 제공하고 있다.

라. 관광명소

○ 테푸이아(Te Puia)

도시명	로토루아
주소	Hemo Rd, Tihiotonga, Rotorua
운영시간	오전 8시~오후 5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에 있는 간헐천 관광지이다.

○ 스카이라인(Skyline Rotorua)

도시명	로토루아
주소	178 Fairy Springs Rd. Fairy Springs, Rotorua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스카이라인 로토루아에는 곤돌라를 타고 로토루아 호수와 시내 및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루지, MTB 바이크 등 다양한 레저활동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 공간이다.

○ 스카이다워(Skytower)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2 Victoria St. W Auckland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높이 328m로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220m 높이에 있는 전망대는 이음새가 없는 유리창을 통해 360도의 오클랜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 번지점프 체험도 가능하며 전망대에는 레스토랑이 있어 오클랜드 시내 야경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켈리탈튼 수족관(Kelly Tarlton's Sea Life)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3 Tamaki Drive, rkei Auckland
운영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뉴질랜드 해양탐험가인 켈리탈튼이 1985년 설립했다. 120m의 통로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고, 관람객은 머리위로 움직이는 바다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마. 식당

- 현지식당

○ 세일즈(Sails)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78-9890
주소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가격	NZD 30불 이상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2시 30분, 오후 6시~오후 9시
휴무일	레스토랑 사전 공지에 따라 연말 1~2주 휴무
소개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West Haven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 오비츠(Orbits)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63-3000
주소	72 - 78 Victoria St W, Auckland
가격	NZD 30불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30분~오후 9시 30분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스카이 타워 전망대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오클랜드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식사 할 수 있는 곳이다.
----	--

○ 프레고(Prego)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76 3095
주소	226 Ponsonby Rd, Ponsonby, Auckland
가격	NZD 25불 이상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11시
휴무일	레스토랑 사전 공지에 따라 연말 1-2주 휴무
소개	오클랜드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현지인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자료원 : 각 식당 홈페이지>

- 한국식당

○ 반상(반상)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02-1838
주소	1C, 47 High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가격	NZD 15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캐주얼한 한국 식당으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식이 준비되어 있다.

○ 한식(Hansik)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930-0055
주소	19 Drake St, Freemans Bay, Auckland
가격	NZD 15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휴무일	레스토랑 사전 공지에 따라 연말 1-2주 휴무
소개	오클랜드 베스트 레스토랑으로 꼽힌 한식 레스토랑으로 현지인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자료원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크라운 플라자(Crowne Plaza Auckland)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28 Albert St, Auckland
전화번호	(64 9) 302 1111
홈페이지	http://www.crowneplaza.com/Auckland&lrn;
숙박료	NZD 160 이상
소개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Grand Millennium Hote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1 Mayoral Dr, Auckland
전화번호	(64 9) 366 3000
홈페이지	https://www.millenniumhotels.com/en/auckland/
숙박료	NZD 180 이상
소개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노마드 호스텔(Nomads Auckland Backpackers Hoste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6-20 Fort St, Auckland
전화번호	+64 (09) 300-9999
홈페이지	https://nomadsworld.com/new-zealand/nomads-auckland-hostel/
숙박료	NZD 25 이상
소개	배낭여행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 호스텔

<자료원 : 각 호스텔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뉴질랜드의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주말 저녁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가 밀집 지역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이 지역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일몰 후에는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빈집이나 차를 터는 좀도둑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하며 보험의 긴급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경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NZD 2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NZD 9.80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경찰, 구급: 111
-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임대의 경우는 일반 단독 주택과 시내 아파트 등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돼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매월 지불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2018년 12월 11일 이후부터 폐지되었으며 임대인이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기관에 예치해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데 사용한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가 더 비싸며,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해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가격에서 할인받는 것이 좋다.

최근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보급이 부족해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신규주택 건설, 투자제한 정책 등의 정부 규제에 현재 소강상태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요로 인해 주택 임대 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화

각 지역의 Telecom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번호를 부여받고 대부분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전화선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 지역 내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 일반 전화 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070 인터넷전화 보급이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압/플러그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30~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해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입국장의 매점이나 한국 식품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식수

뉴질랜드 수도물은 식수로 사용 가능하다. 레스토랑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수는 대부분 수도물이며 생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구입해 이용한다. 중고차는 직접 주말 오전에 열리는 Turners Auction(www.turners.co.nz)에 참가해 구입하거나 중고차 딜러 가게를 통해서 구입, 혹은 뉴질랜드 온라인 장터(www.trademe.co.nz)에서 구입하는 법이 있다.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채무 현황, 사고 여부,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carjam.co.nz)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내용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나 채무나 사고 등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9.90뉴질랜드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차량가격

뉴질랜드는 자체 생산 차량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AA New Car Prices : <https://www.aa.co.nz/cars/buying-a-car/car-buying-guide/new-cars/new-car-prices/>

운전면허 취득

2013년 5월 뉴질랜드 교통국은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체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ANZ Bank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Bank of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Westpac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ASB Bank: 호주계 은행
- Kiwi Bank: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에 유선으로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좋으며, 구비 서류로는 주소지 증빙, 영문주민등록등본, 여권이 필요하다. 주소지 증빙의 경우 우선 은행에서 해당 주소로 발송한 주소지 증빙 우편물을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동반된다.

영문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민원 24시(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ANZ 은행에서는 영문주민등록등본을 주소지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통장 개설 후 카드 수령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금액의 비상금은 남겨두고 돈을 예금하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뉴질랜드 정부의 외국인 대출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무비자 외국인에 대한 은행계좌 개설이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으로, 취업 비자나 학생비자와 같은 적합한 비자 취득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IB 준비과정, IB Diploma
학비	NZD 33,000
홈페이지	http://www.aic.ac.nz

- 현지학교

○ Auckland Grammar School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NCEA, CIE
학비	영주권자 이상 무료
홈페이지	https://www.ags.school.nz

○ Epsom Girls Grammar School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NCEA
학비	영주권자 이상 무료
홈페이지	http://www.eggs.school.nz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마. 병원

○ Waitakere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55-75 Lincoln Rd, Henderson, Auckland
전화번호	09-839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North Shore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24 Shakespeare Rd, Takapuna, Auckland
전화번호	09-486 89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Auckland City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 Park Rd, Grafton, Auckland
전화번호	09-367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Farmers

주소	뉴질랜드 전역 58개 매장 보유
홈페이지	https://www.farmers.co.nz/

○ Smith and Caughey's

주소	253-261 Queen St,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smithandcaugheys.co.nz/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식품점

○ 한양 마트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85 Wairau Rd, Glenfield,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 로얄 세이브 마트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61 Hobson St,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 북마트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5 Mount Eden Rd, Mt Eden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자료원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New Year's Day	2019-01-01	신정 연휴
New Year's Day	2019-01-02	신정 연휴
Auckland Anniversary	2019-01-28	오클랜드 기념일(오클랜드 지역만 휴일임)
Waitangi Day	2019-02-06	영국-마오리 원주민 간 평화조약 체결일
Good Friday	2019-04-19	부활절 연휴
Easter Monday	2019-04-22	부활절 연휴
ANZAC Day	2019-04-25	현충일
Queen's Birthday	2019-06-03	영국 여왕 탄신일
Labour Day	2019-10-28	노동절
Christmas Day	2019-12-25	크리스마스
Boxing Day	2019-12-26	박싱데이

<자료원 : www.employment.govt.nz>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오클랜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무역관 주소 : Level 16, Huawei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 대표 전화 : +64-9-373-5792
- 팩스 번호 : +64-9-373-2952
- 이메일 : akl_ktc@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버스
 - 버스운임: 18뉴질랜드달러(10~30분 간격, 24시간 운행) Town Hall, 380 Queen St 하차
 - Queen Street(Auckland Central Backpacker 앞) 하차
 - 하차 지점에서 무역관까지 도보 10분(무역관 주소 이용)
- 택시
 - 택시운임: 약 7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건물 주소를 기사에게 알려주고 무역관 입주 건물 앞에서 하차
- 셔틀 미니밴
 - 셔틀운임: 약 40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인접 크라운플라자호텔을 기사에게 알려주고 호텔 앞에서 하차
 - 사전 예약 필수(www.supershuttle.co.nz)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